

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
출연안



구 미 시

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에서는 산·학·연·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특화사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음.
- 나.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2) 대 표 자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사장 김장호
- 3) 소 재 지 :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
- 4) 출연예정액 : 13억원
- 5) 출연금 사용처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

나. 주요 사업

1) 수준 높은 시험·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운영사업 : 550백만원

-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시험·분석 연구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 이용 기업수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및 업그레이드 비용 증가
-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저렴한 장비 이용수가 적용과 KOLAS 인증 유지 및 서비스 확대 추진
- 장비업그레이드 및 영선유지를 통한 장비 활용률 향상 및 입주 기업 등에 장비사용 할인 제공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

2) 우수기업 발굴·유치를 위한 임대·시설운영사업 : 750백만원

- 최적의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기술원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입주시설 보수, 주차선 정비, 건물 외벽 도색 등 건물·시설물 개선 진행
- 입주기업 임직원의 편의를 높이고 기술원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체육시설(혁신관 헬스장) 전면 리모델링 실시
-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16년이 경과된 노후 화재수신기(1대) 및 중계기(300대)를 최신식 설비로 교체하여 화재 발생 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

다. 출연의 필요성

1) 수준 높은 시험·분석 지원을 위한 장비운영사업 지원 필요

- 2003년부터 구축된 기술원 보유 시험·분석 장비의 91.7%는 구축 후 5년 이상 경과 되었고, 연구장비 노후화에 따라 지역 기업을 위한 수준 높은 시험·분석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발생
- 이용 건수 증가('17년 9,088건 → '21년 10,418건)에 따라 부품 및 소모품 교체비용 등 장비 유지보수비는 동반 상승하고 있으나, 타기관 대비 저렴한 장비이용수가 적용 및 지역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장비사용료 감면 지원 등에 따라 기관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 발생

< 연구장비 현황 요약 >

(단위 : 대, 백만원)

부서명	장비구축현황					비고
	2017년도 이전 구축		2017년도 이후 구축		노후화율	
	장비수	금액	장비수	금액		
시험분석연구센터	148	21,365	5	3,665	96.7%	시험·분석
나노전자소재부품연구센터	44	8,636	2	1,007	95.6%	공정·테스트
탄소복합소재연구센터	24	3,073	-	-	100%	"
미래이동통신연구센터	42	58,706	10	20,712	80.7%	"
실감미디어연구센터	28	10,907	4	997	87.5%	"
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	94	7,964	1	1,157	98.9%	"
지능형웨어러블연구센터	-	-	12	8,059	0%	"
합계	380	110,651	34	35,597	91.7%	

※ 노후화율(%) = 2017년 이전 구축 장비 대수 ÷ 전체 장비대수

<장비지원 수입과 지출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'19	'20	'21	'22	'23	비고
수입	장비수입[A]	1,645	1,750	1,889	2,028	2,183	
지출	지출 합계[B]	2,195	2,300	2,439	2,578	2,733	
	공공요금	735	750	772	814	837	
	유지보수비용	840	900	973	1,026	1,049	
	장비부서 인건비	620	650	694	738	847	
차이 [A]-[B]		-550	-550	-550	-550	-550	

- 기업 수요에 맞춘 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 실시로, 지역 기업이 타지역 연구기관을 이용해야 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, 수준 높은 시험·분석 지원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
- '22년 장비운영사업비 지원 활용 실적
 - 장비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'21년 270백만원 및 '22년 597백만원(예상)
 - 지역 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연구장비사용료 10% 감면 지원
 - * '21년 기준 지역기업 이용비율 49% 적용시 연 118백만원 감면 예상
 - * '22년 지역기업 연구장비사용료 감면 시행 후 단계적으로 비율 확대 예정
 - 국제공인시험기관(KOLAS) 인증 범위 유지(38백만원),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, Eco-Lab, 국내 완성차 3社 전자기집합성(EMC) 인증시험기관 등 공인시험기관 자격 유지 및 시험분석서비스 제공
 - 장비활용 기업수탁과제 5건(263백만원) 발굴 및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진행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

2) 우수기업 발굴·유치를 위한 임대·시설운영사업 지원 필요

- 구미지역 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·유치하기 위하여 지역 타 기관 대비 최대 16% 저렴한 임대료 책정 운영

*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 감면 지속 지원

- 매년 증가하는 시설운영비 부담을 임대 수입으로 보전하기 위해 타기관 대비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재산정이 필요하나, 2015년부터 매년 동일한 임대단가 적용

* 입주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로 현행 임대단가를 유지하고 있어 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

< 유사기관 임대단가 비교 >

(단위 : 원/㎡)

기관명	월 평균 임대단가	비고
구미전자정보기술원	6,065	
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	6,822	대비 12% ↓
금오공대 창업진흥센터	5,980	대비 1% ↑
대구테크노파크	7,270	대비 16% ↓

※ 임대 전용면적 기준 환산 단가

- '22년에 이어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유지보수비 증가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임대시설 공용면적의 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운영비 지원 필요

< 시설임대 수입과 지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23년	'22년	비 고
임대율		75%	75%	
수입	수입 합계[A]	3,591	3,379	
	임대수입	2,613	2,605	
	기술원 자체 대응분	978	774	
지출[B]		4,341	4,129	
차 이 [A]-[B]		-750	-750	

※ 임대건물 : 진흥관, 혁신관, 성장관, 이노플라자, 국산화센터 등 총 9개동

※ '22년 현재 입주율 및 기업수 : 83%, 161개사(630여명)

- 임대·시설 운영사업비 지원 및 활용 실적
- 코로나19로 지역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조치를 계속 시행함으로써 기술원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

< 연도별 입주기업 지원현황 >

년도	구 분	지원내용	지원기간	감면금액 (백만원)	기업수	비고
2020	임대료 감면	임대료 30%	'20.4~12월 (9개월)	273	159	실적
2021	임대료 감면	임대료 50%	'21.7~12월 (6개월)	385	194	실적
	연체료 경감	연체기간에 따라 5~10% → 2.5~5% (50% 경감)	'21.1~12월 (12개월)	9.3	41	

-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운영 활성화 및 우수한 기업 유치를 위한 식당·카페 등 편의시설 인프라 조성
 - 1층 로비 내 카페 신규구축, 10층 구내식당 운영
 -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율은 '21년(9월 기준) 81.7%에서 '22년(9월기준) 81.7%으로 동등 수준
-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활동 추진
 - 고효율 LED등 교체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천
-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정비 및 안전예방 활동 강화
 - 클린룸 운영상태 실시간 모니터링(예:CCTV)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구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
 - 연구실 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관함(예:냉장고, 캐비닛 등) 신규 구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본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(붙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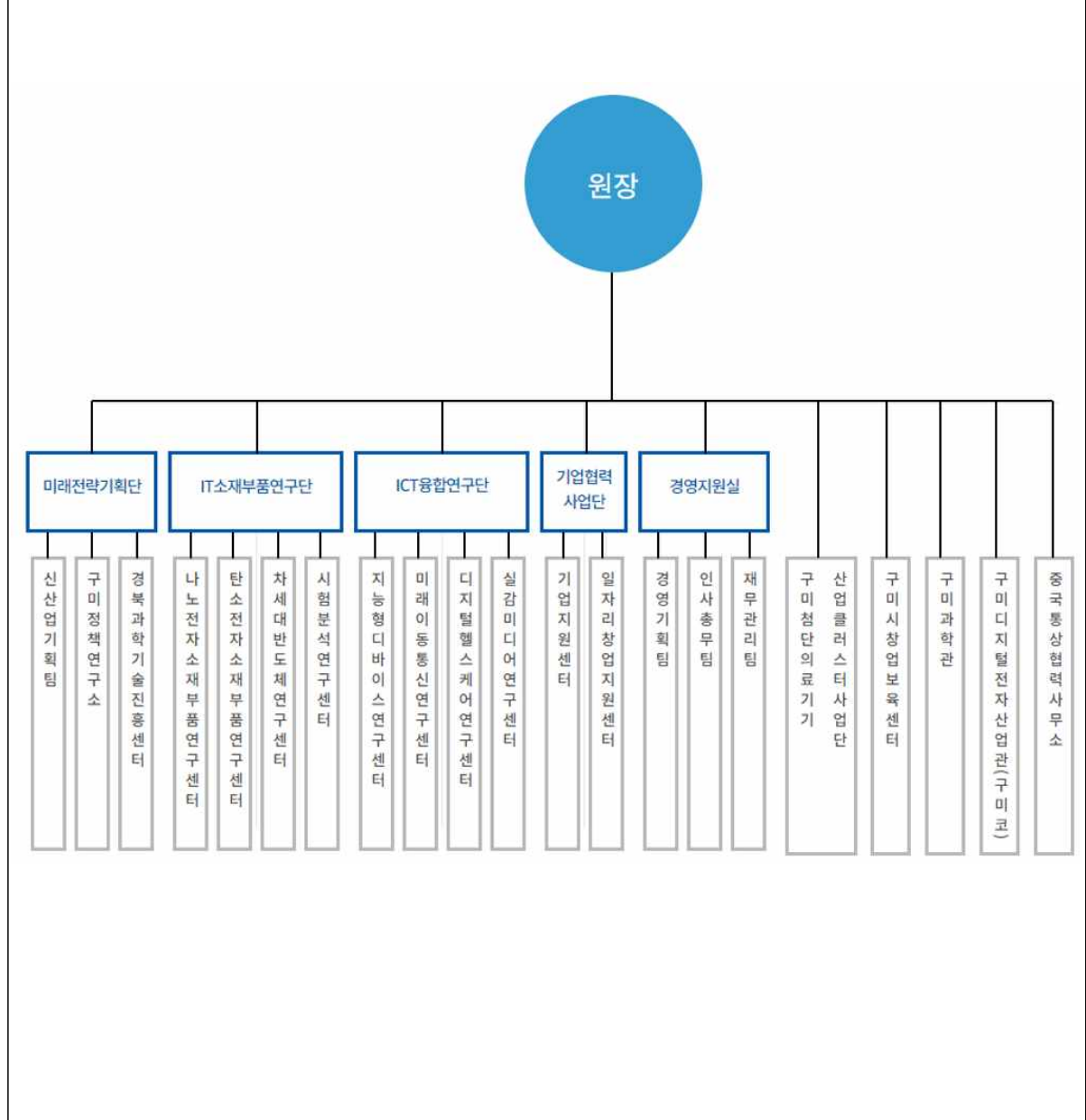
□ [재]구미전자정보기술원 현황

①기관명(주소)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(주소)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			
②기관소개	○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및 지역특화산업 연구개발 및 육성 ○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		
③설립근거	○ 법 률 : 민법 제32조 ○ 규 칙 :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○ 조 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		
④연 혁	○ 설립일자 : 2007. 7. 30. ○ 기관명칭 변경 : 해당없음	⑤관계기관	○ 산업통상자원부
⑥주요기능	○ 신성장동력산업 및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○ 산·학·연·관 지역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협력거점 구축 ○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○ 지역 전자정보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수립 및 집행 ○ 제품의 규격·성능시험·품질평가 및 품질인증사업 등		
⑦기관장 소개	○ 성 명 : 김장호 ○ 학 력 : 경북대학교(경제학) 학사,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석사 ○ 경 력 :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 실장 現)구미시장		
⑧조 직 기구도	*별첨 참고		
⑨공시책임자	○ (담당자)(소속) 인사총무팀 (직책·성명) 선임 최재완 (전화) 054)479-2016 ○ (확인자)(소속) 인사총무팀 (직책·성명) 팀장 박성원 (전화) 054)479-2012		

[별첨]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조직기구도

□ 기 구 : 4 단, 1 지원실

- 이사장 : 구미시장

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6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□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

제11조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(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"산업기술개발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비·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

등에 관련된 기술

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 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 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 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 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 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 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 10. 삭제 <2013.3.23.>
 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 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 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 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-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

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 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 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 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 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·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□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신성장산업과
입 안 자	과 장	조 영 열
	담 당	신 주 선
	담 당 자	최 영 진 (480-6152)